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친화업소 인증제 도입〉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0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01. 21.
3. 회 부 일 : 2026. 0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는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규제 방식에 치우쳐 있으나,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그 유효기간, 표시, 취소 절차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 표시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의3 신설, 제53조의4 신설, 제75조제3항 개정).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3조의3(아동친화업소의 인증)</u> <u>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과 그 동반 보호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아동친화업소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u>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u>

현행	개정안
	<u>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u> <u>④ 인증을 받은 영업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u> <u>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u> <u>2. 인증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u> <u>3.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u>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u>

현행	개정안
<신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소가 제6항제2호 또는 같은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인증 대상 업종, 인증 및 인증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아동친화업소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현행	개정안
제7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④ (생략)	<u>권리 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u> <u>1. 아동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u> <u>2. 인증표시 발급 및 홍보</u> <u>3. 가족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u>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친화업소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u>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으로서 일반적으로 아동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의미함¹⁾. 현재 전국 약 500여개의 노키즈존

매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²⁾.

업종별로는 커피·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 76.1%, 음식점 18%, 애견카페 3.9%, 기타업종 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구역이 노키즈존인 곳은 62.4%, 일부 구역인 시간·상황에만 노키즈존인 곳은 37.4%로 나타났음³⁾.

- 노키즈존 운영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살펴보면, 찬성 논거로는 영업의 자유, 아동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과 배상책임 예방, 매장 환경 및 분위기 유지 등이 제시되고 있고, 반대 논거로는 아동 및 동반 고객에 대한 차별, 아동 양육에 부정적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역행, 아동 정서 발달 악영향 등이 제시되고 있음.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음.

- 이에 정부는 2025년 12월 26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1)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2) 노키즈존 공유 웹사이트(yesnokids.net) 기준 458개소, 김아름 등,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3. 10. 기준 588개소

3) 김아름 앞의 글, p.69.

아동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하고 정보제공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였음. 나아가 그 구체적인 인증 기준으로는 아동 전용 식기·의자 등 제공, 위생·청결 수준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일부(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부분)>

◇ 추진과제

1.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 지역에서의 아동친화 환경 조성

-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아동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및 정보제공 추진

* (인증기준 예시) 아동 전용 식기·의자 등 제공, 위생·청결 수준 충족 등

□ 개정안은 아동친화업소 인증제를 도입하여 아동과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선별하고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식당 등에서 아동을 환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안동시, 경산시, 포항 남구, 제주시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명칭(웰컴키즈존, yes키즈존, 아이러브존 등) 및 인증 기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참고 사례: 서울특별시 오케이존 >

- **(개요)** 아동 친화적인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운영
- **(현황)** 2022. 12.시행 이후 2022년 350개소 → 2026년 759개소 지정 예정(25.12. 기준)
- **(지정요건)** ① 키즈메뉴 판매, ② 어린이 식사 도움 용품 비치(식기·유아의자 등), ③ 신고 면적 80㎡(권고)
 *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에 서울키즈 오케이존 등록 필수
- **(자원내용)** ① 물품지원비(30만원, 1회), ② 서울키즈 오케이존 식별마크 부착, ③ 홍보 (네이버,카카오 지도 등)
- **(사업결과)** 사업주들의 매출증대 및 이미지 개선, 아동식기 등 편의용품 증대 등 업주 및 양육자 만족도 증가

□ 다만, 개정안은 아동친화업소의 개념을 “아동과 그 동반 보호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라고 규정하면서(안 제53조의3제1항) 인증 대상 업종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9항),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은 노키즈존 예방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제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백년소상공인의 정의 및 지정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의 공동체사업단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아동친화 환경조성 및 아동권리 존중을 위해 아동친화업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동친화업소의 유사사례·자방자치단체·해외사례 분석 연구 등 선행연구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3개월을 사업 준비에 충분한 기한(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